

##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예시 발표

# 수입개방에 앞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미국의 수입개방압력과 우리나라 농민들의 집단항의 사이에서 난항을 거듭해 오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올해 82개, 90년 76개, 91년 85개 품목 등 91년까지 3년간 총 2백43개 품목의 농수산물 수입을 개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오는 93년까지 5천61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지난 4월 8일 관련 부처와 협의, 확정 발표한 「'89~'91년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및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농수산물 1천7백85개 품목(HS방식 분류) 가운데 6백43개 품목을 대상으로 개방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중 농축산물 1백38개, 임산물 10개, 수산물 95개 등 총 2백43개 품목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 파인애플, 바나나 등 과실 20개 ▲ 돼지의 간장, 돼지고기 식용설육(신선, 냉장, 냉동) 등 축산물 24개 ▲ 소시지, 복

승아 쥬스 등 1백6개 ▲ 홍합, 계 등 수산물 53개 ▲ 옥수수가루, 밀 등 곡물 19개 ▲ 배합사료(양돈용), 대두박, 사료첨가제 등 사료 10개 ▲ 해바라기씨 등 기타 11개 품목 등이다.

이같은 수입개방조치는 수출입 공고가 개정·고시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작년말 현재 71.9%에서 '89년 76.1%, '90년 80.3%, 91년에는 84.9%로 높아지게 된다. 또 지난해 말 43억2천5백만 달러이던 농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검토해 왔던 1백 90여 개 품목의 개방계획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발표로는 최대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품목이 예정보다 크게 확대된 것은 미국과 EC 그리고 후발개도국의 수입개방압력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는 등 국제통상여건이 한층 악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예시된 품목에는 미국측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1백 19개 품목 가운데 50% 수준인 62개 품목만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측이 어느 품목보다 강력하고 줄기차게 수입개방과 관세 인하를 요구해온 콩·옥수수·쇠고기·사과·배·오렌지·마늘·양파 등이 예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미국쪽에서 반발, 추가개방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조치와 함께 보완대책도 발표했으나 농어민의 입장에서는 미미할 뿐더러, 수입개방조치로 농어민과 농어촌의 타격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을 보면, 수입개방으로 직접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보상해 주고, 수입자유화 대상작물을 다른 작물로 전환할 때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즉 정

부는 보완대책으로 유형별 보상과 구조조정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89년에 2백13억원, '90년에 6백59억원, '91년에 1천4백91억원, '92~'93년에 2천6백98억원 등 총 5천61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금은 예산에 매년 반영, 조달하되 차액 보상지원에 2천8백3억원, 생산조정보상지원에 1백8억원, 작목전환응자에 4백억원, 농수산부문구조조정에 1천7백50억원씩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같은 보완대책에 대해 농민들은 부실기업정리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할 뿐더러, 이번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생산기반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보고 심한 우려와 함께 커다란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들의 경우, 정부의 이번 축산물 및 가공품 수입자유화 조치에 심한 반발을 보이며, 보다 균원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정부가 그동안 축산생산자단체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전의 한 생산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와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시지, 돼지고기 식용설육 등을 수입개방하겠다는 것은 곧 「축산업 포기선언」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은 일본, EC 등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이번 3년간의 자유화 예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

### ◇ 미국 개방요청 유보품목(57개)

양파(건조), 마늘(2: 건조, 냉동), 오렌지, 신선포도, 사과, 배, 복숭아, 기타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감귤, 포도), 감귤류 %레·페이스트, 오렌지주스(4: 농축냉동, 미농축냉동, 농축미냉동, 기타), 포도주스, 사과주스, 두부, 호프, 신선·냉장쇠고기(3: 도체 및 이분도체, 기타의 것 뼈째절단, 뼈없는 것), 냉동쇠고기(3: 도체 및 이분도체, 기타의 것 뼈째절단, 뼈없는 것), 소의 식용설육(신선, 냉장), 소의 혀(냉동), 기타 소의 식용설육(냉동), 닭고기(신선·냉장, 냉동), 닭의 절단육(신선·냉장, 냉동), 기타 난황, 기타 조란, 쇠고기 조제품, 조제분유, 가공치즈, 동물의 위, 소정액, 돼지정액, 수정란, 녹두, 팥, 감자의 분과 조분, 감자플레이크, 옥수수(3: 종자용, 사료용, 기타), 옥수수전분, 대두, 낙화생(2: 탈각한 것, 탈각안한 것), 기타 낙화생조제품, 육·설육의 분과 조분(사료용), 사료첨가제(2: 항생물질로 주로한 것, 기타), 잎담배(4: 주맥 제거한 것의 황색종 또는 버리종, 주맥 일부·전부 제거한 것의 황색종 또는 버리종)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현재 축산업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보다 균원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한다.

또 돼지고기의 수입개방 뿐만 아니라 다른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이 곧 양돈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입개방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작목을 재배하던 농민은 전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농촌을 떠나든가 아니면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양돈업 등에 전업하여, 그렇지 않아도 과잉상태에 있는 돼지고기 생산을 부채질해 가격 폭락을 가져와 「통반자살」의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고추와 담배 재배농가의 예를 우리는 보아왔다. 이런 이유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은 수입대상 품목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농축산인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

방에 따른 말로만의 보상차원이 아닌 농촌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균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양돈분야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각종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규제조치를 해제하고 생산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를 면제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시설 근대화, 도축장시설 현대화, 유통시설, 저장시설 등에 과감히 보조 또는 장기저리융자를 실시해 국제경쟁력을 길러주고, 그 후에 수입개방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은 농어민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중대 문제임을 지적해 둔다.

〈김동성 편집과장〉

## '89~'91 기간중 수입자유화 예시품목 내용(2백 43개)

연도 품목	'89(82)	'90년(76)	'91(85)
과 실 (20)	대추야자, 망고, 망고스틴, 과버, 나무딸기, 커런트와 구즈베리, 슬로우, 과파야, 초분류 딸기(신선), 크렌베리, 피스타치오	페칸, 기타 신선과일(키위)	파인애플, 바나나, 멜론, 호두(안벗긴 것), 호두(벗긴 것), 헤즐넛 또는 월버트(안벗긴 것), 헤즐넛 또는 월버트(벗긴 것)
축 산 물 (24)	돼지의 간장(냉동), 산양고기(냉장), 말·당나귀·노새·비새의 고기(신선), 기타 면양의 고기(도체와 이분도체, 신선, 냉장), 오리고기 무절단(신선, 냉장), 기타 식용설육(신선), 소의 간장(냉동)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식용육분, 산양고기(냉동), 산닭(185g 이상) 말·당나귀·노새·비새의 고기(냉동), 오리고기 절단육(신선, 냉장), 오리고기 절단육(냉동), 기타 식용설육(냉동)	돼지고기 식용설육(신선, 냉장), 돼지고기 식용설육(냉동), 사슴고기, 어린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기타 면양의 고기(뼈째로 절단, 신선), 기타 면양의 뼈없는 것(신선), 곤충류(꿀벌), 오리고기 무절단(냉동), 어류의 제외한 동물의 장
가 공 식 품 (106)	과실혼합주스, 육즙, 팜하트, 딸기통조림, 잇꽃 유(조유), 잇꽃유(정제유), 잇꽃유(기타), 바비수유(조유), 바비수유(정제유), 바비수유(기타), 호호바유와 그 분획물, 낙화색유(조유), 낙화생유(정제유), 낙화생유(기타), 기타 유크조제품(밀폐용), 기타 유크 조제품(비밀폐용), 초분류 딸기(일시저장한 것), 기타 과실주스(복숭아, 딸기 제외), 챔·셀리류(균질화한 조제품), 챔·젤리류(감귤류 챔·젤리·미아말레이드), 챔·젤리류(기타 과실의 제외), 챔·젤리류(기타 과실과 조제품), 커피크리미, 배통조림, 조직대두단백, 피넛버터, 연어(통조림의 조제품), 바다가재(통조림의 조제품), 기타갑각류(통조림), 기타갑각류(통조림의 조제품), 청어(통조리의 조제품), 멸치(통조림의 조제품), 대구(염수장), 대구피레트, 어류의 간장(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어란(훈제), 어류의 피레트(염장, 염수장), 꽁치(염장 염수장), 다시마(염장), 기타 갑각류(염장, 염수장)	소시지, 동물간장 조제품(밀폐 용기의 것), 동물간장조제품(밀폐 용기 이외의 것), 딸기주스, 기타 혼합주스, 버찌(일시저장한 것), 버찌(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 연뿌리(설탕으로 조제한 것), 라임주스, 캐비어, 해바라기씨유(기타), 타피오카 대용물, 기타 타피오카 대용물, 파인애플(설탕조제), 기타 일시저장한 과실, 파인애플주스, 액상요구르트, 파인애플(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조제분유 이외의 것), 토마토주스, 해바라기씨유(정제유), 계살(훈제), 계(통조림의 조제품), 기타 연체동물(통조림), 기타 연체동물(훈제), 기타 연체동물(통조림, 훈제이외의 조제품), 정어리(통조림의 조제품), 새우와 보리새우(훈제),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조제품), 홍합(염장, 염수장), 어류의 연육(신선, 냉장), 명태(염장, 염수장),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염장, 염수장), 해삼(염장, 염수장), 기타 연체동물(염장, 염수장)	유채유(조유), 유채유(정제유), 유채유(기타), 미강유, 마롱글라세, 조당(사탕수수로 당도 98도 이하), 조당(사탕수수로 당도 98도 이상), 조당(사탕무우로 98도 이하), 조당(사탕무우로 98도 이상), 칠면조 조제품(밀폐용기 이외의 것), 대두유(조유), 대두유(정제유), 대두유(기타), 해바라기씨유(조유), 복숭아(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옥배유(조유), 옥배유(기타), 기타 다행이(통조림), 계살(통조림 이외의 조제품), 새조개(훈제), 고등어(통조림 이외의 조제품), 생선소시지, 기타 해초류(조제품), 어류의 피레트(신선, 냉장), 기타 어류의 연육(신선, 냉장), 성게(염장, 염수장), 해양동물의 육과 식용설육, 식용어분, 상어지느러미(건조, 염장), 문어(염장, 염수장), 개량조개(염장, 염수장)
수 산 물 (53)	연어(신선, 냉장), 대구(냉장), 해덕(냉동), 김정대구(냉동), 민대구(냉동), 닭새우(산것, 신선, 냉장, 건조, 염장, 염수장), 바다가재(산것, 냉동하지 않은 것), 기타 갑각류(건조), 가리비과 조개(건조), 달팽이, 홍합(산것), 기타 갑각류(산것, 신선, 냉장)	바다가재(냉동), 기타갑각류(냉동), 홍합(냉동), 송어(신선, 냉장), 날개다랭이(냉동), 황다랭이(냉동), 눈다랭이(냉동), 기타다랭이(냉동), 계(건조), 굴(냉동), 채첩(산것, 신선, 냉장), 성게(건조), 성게(신선, 냉장),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신선, 냉장),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냉동), 해삼(건조), 우렁쉥이(건조), 달고기(냉동)	어란(신선, 냉장), 어란(건조), 가리비과조개(신선, 냉장), 가리비과조개(냉동), 다시마(신선, 건조), 계(신선, 냉장), 계살(냉동), 해삼(냉동), 잉어(활어),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건조), 해삼(냉동), 잉어(활어), 기타여류(활어), 갯장어(신선, 냉장), 농어(냉동), 새꼬리민태(냉동), 백합(신선, 생장), 진주조개(신선, 냉장), 새조개(산것), 바지락(건조), 피조개(냉동), 피조개(신선, 냉장), 개아지실(신선, 냉장), 개아지실(냉동), 개아지실(건조)
곡 물 (19)	잡두, 이집트콩, 렌즈콩	옥수수기루, 호밀가루, 밀(듀럼종), 밀(메슬리), 밀(기타), 호밀, 귀리	곡물의 배아, 채두분, 조, 수수, 강낭콩, 완두콩, 기타 콩, 기타 건조채두류, 대두분
사 료 (10)	배합사료(양돈용), 들깨박, 기타 식물성박, 수지박, 기타 배합사료(대용유 제외)	알팔파, 배합사료(어류용), 사료첨가제(비타민을 주로한 것), 사료첨가제(미량광물질을 주로한 것)	대두박
기 타 (11)	복숭아·자두·살구의 핵, 잇꽃씨, 시냇, 페니	저피, 해바라기씨	떡갈잎, 명계잎, 옥사, 견연사(소매용), 유채